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0. 7. 15.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정윤 의원 외 6인(안대국, 김화덕, 윤권근, 홍복조, 박정환, 서민우)
- 발의일자: 2020. 6. 30.
- 회부일자: 2020. 7. 3.
- 상정 및 의결: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 7. 15.)

### 2. 개정이유

- 달서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셋째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정의와 지원대상의 범위 규정 자구 수정(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 나. 셋째자녀 지원기준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 4.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박성우)

-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중임. 달서구 역시 이에 부응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을 지원하여 왔음.
- 그러나 대구시 예산과 별개로 달서구 자체 예산으로 넷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함은 달서구의 출산분위기 조성에 일정수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음. 동 개정안은 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구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셋째 자녀에게도 연 50만원씩 2년간 총 100만원 지원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4조제1항)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
-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수 (2017년 3,706명→ 2018년 3,041명) 및 합계출산율(2017년 1.04명→2018년 0.90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 달서구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점진적이나마 출산분위기 조성에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개정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한편, 향후 5년간 매년 200여 명 수준의 셋째아 출생과 이에 따른 매년 2억 원 수준의 예산 부담(집행부 제출, 연도별 예산(비용)추계 자료) 등 100% 구비로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 조달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차원에서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